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호식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허창원 의원 등 7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년 4월 9일
- 회부일자 : 2019년 4월 11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는 2007년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행정절차법 개정 등으로 국민참여 방법이 확대 개선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를 폐지함

5. 검토의견

- 이 폐지조례안은 2007년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행정절차법 개정 등으로 국민참여 방법이 확대·개선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임.
-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가 제정된 2007년 4월 이후

행정절차법은 총 11차례 개정이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 입법예고기간 확대
- 행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청문신청권 신설 등 청문제도를 개선
- 전자적 정책토론 등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 행정예고에 관한 통계작성 및 공고의무 신설
- 행정청이 처분의 긴급성 등을 사유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해당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전 통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 등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음.

- 행정의 공정한 절차 확보와 국민의 권익보호를 실현하려는 행정절차법의 개정은 사전적 권익보호 수단임에 반해 행정행위 이후 국민의 권익보호를 지키기 위한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는 사후적 보호수단으로 행정절차법의 개정으로 운영 실적이 부진했음. 따라서 이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음.

붙임: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 폐지조례안. 끝.